

2022년 제10회 여수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
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
에 공포한다.

2022년 / 2 월 / 15 일

여 수 시 장 정 기 맹



여수시 규칙 제804호

붙임 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시행규칙 1부.

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금주구역별 경계 지정) 「여수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.)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,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: 금주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
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: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: 금주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
- 그 밖에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: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

제3조(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)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

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.

제4조(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)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주구역에서 금주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주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과태료 부과대장 정리)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(제3조관련)

1. 표시방법

- 가.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의 모양,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- 나. 안내표지는 날씨, 계절 등 환경변화와 폭우, 태풍, 우박 등으로 인한 파손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.
- 다. 안내표지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.

라. 안내표지 내용

- 1) 금주를 상징하는 그림, 문자
- 2) 위반 시 조치사항(과태료 부과 등)
- 3) 그 밖에 안내가 필요한 사항

2. 설치방법

- 가. 금주구역 안내표지는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띠는 곳에 설치한다.
 - 1)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
 - 2) 그 밖에 금주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
- 나. 표지판,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.
- 다. 눈·비·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.

3. 관리기준

- 가.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표지를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.
- 나. 안내표지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.
- 다. 안내표지가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.

[별지] 제1호 서식]

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자 치리대장(제5조 관련)

210mm×297mm(ଛାତ୍ରୁଙ୍କା 60g/m²)